

안양시 시민의 날 조례

제정 1973. 11. 10 조례 제 94호
개정 1996. 7. 18 조례 제1460호
일부개정 2020. 3. 2 조례 제3170호(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
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, 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애郷심을
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3. 2>

제2조(시민의 날) 매년 10월 1일을 안양시 시민의 날로 정한다. <개정 2020. 3. 2>

제3조(위임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7. 18 조례 제146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3. 2 조례 제3170호,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
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